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7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노종면·윤종군·김교흥

정일영 · 문금주 · 윤건영

소병훈 • 박 정 • 박상혁

조승래 • 허종식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이용하도록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 ·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 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3(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 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

존·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기관을 말한다.	<u>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u>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
	<u>다.</u>
	2.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
	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
	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u><신 설></u>	제32조의3(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수행하는 연구개발사
	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데이
	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
	·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
	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마
	런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제1
	항에 따른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 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